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9-5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조성과 권리증진을 도모하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사유를 정함(안 제2조·제3조)
- 다. 위원장 직무와 그 대행을 정함(안 제4조)
- 라. 회의 운영원칙과 간사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마.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우선 보호조치와 자료제출 요구 등을 정함(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 1차 추경 시 예산 1,400천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2. 13.~3. 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불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척·기피·회피)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3조(해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우선 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 조치를 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나. 관련 조문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 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④ (생략)

2. 미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 행복나눔과장 김 득 환